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신설 2019. 6. 12.>

[ ] 징수유예
부과금 [ ] 분할납부 신청서
[ ] 징수유예 기간 연장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청인 (납부자)	성명	생년월일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	
	상호 또는 명칭		
	사업장 소재지		
	사업의 종류	종목	

부과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이유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기간 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 기한	분할납부 금액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 리 절 차

신 청 인	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
신 청 서 작 성 →	접 수
	↓
	검토 확인
	↓
	결 재
	↓
← 통 보	징수유예·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여부 결정